

인천지방법원 2018. 7. 26 선고 2017가단27364 판결 [점유회수등]

전 문

원 고 에이스원 주식회사

피고(선정 당사자) 1. A

2. B

변론 종결 2018. 7. 5

판결 선고 2018. 7. 26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(선정당사자)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에스엘티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을포함한 'C'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,원고는 에스엘티건설 주식회사로부터신축공사 중 공조설비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다.

원고는 2008 . 10.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·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.

그런데 피고(선정당사자)들 및 선정자들은 2016. 9. 12.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.

따라서 원고는 점유의 회수를 구한다.

2. 판단

원고가 점유회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, 갑제 3, 4, 5, 6, 10,11, 12, 13, 14, 15, 16, 17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. 9. 12. 경원고가 이 사건건물을 점유하고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오창훈

별지